「2025년 소상공인 SNS활용 패키지 지원 사업」 소상공인 모집 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「2025년 소상공인 SNS활용 패키지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6일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 사업개요

□ **사 업 명** : 2025년 소상공인 SNS활용 패키지 지원사업

□ **사업목적** :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SNS마케팅 역량을 갖춘 수행기관과 매칭하여 소셜 네트워크 채널 진출 지원

□ **지원대상** : 온라인진출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

* 단, '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'은 신청 불가

□ **지원규모** : 750개사 (수행기관 3개사 x 소상공인 250개사 지원)

□ **지원내용** : 제품 진단·컨설팅, SNS 타겟광고 및 연계지원, 컨설팅 레포트 제공

□ **사업기간** : 선정일 ~ '25. 12. 31까지

□ **추진일정**

지원사업 신청 · 접수		평가 및 선정		사업 추진
3/26 ~ 상시	➡	4월 ~ 9월말	➡	4월 ~ 11월말
한유원		한유원		수행기관 ↔ 참여기업

*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2 신청자격 및 요건

□ **신청자격 :** 소상공인(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)

○ 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」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
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*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 : 10명 미만, 이 외 업종 : 5명 미만
② **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**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**신청제한 :**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[참고] 참조
휴·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제외 품목	○ 해외 수입제품, 대기업 제품 (※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시 지원 가능)
불공정 행위	○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

□ **중복제한 :** 아래 9개 세부 사업 중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수혜 가능

세부사업명	
① (준비) 상품 개선 지원	**⑥ (실전) SNS활용패키지**
② (준비) 콘텐츠 제작	⑦ (실전)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
③ (실전) 온라인 쇼핑몰 판매	⑧ (실전) 홍보
④ (실전) 라이브커머스	⑨ (도약) 스마트물류
⑤ (실전) 로컬상품관	

3 지원 내용

□ SNS 마케팅 지원

< 사업지원 절차 >

❶ 진단 · 컨설팅 ❷ 1차 광고 ❸ (1차) 광고 분석 ❹ 2차 광고 ❺ 분석 레포트

○ **(진단·컨설팅)** 선정된 1개 상품 관련 콘텐츠 기반으로 경쟁시장, 판매포인트, 타겟 등 컨설팅을 통한 광고 방향 및 목표 설정한 전략 수립

- 광고 소재 수집*(영상,이미지 등)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방향 컨설팅** 진행

* 광고 소재는 소상공인 보유 콘텐츠 제공 필수

** (판판대로 지원시 제출된) 상품 기술서를 기반으로 진단 및 컨설팅 진행

○ **(타겟광고 지원)** 선정된 1개 상품에 대한 노출 및 연계 판매위한 SNS광고 유형中 2개 선택 광고 지원

* 각 유형별 광고기간은 최대 1개월 내외 진행하며, 실제 광고기간은 수행기관과 협의 진행

< 광고유형 범위>

광고유형	내용	SNS 채널
❶ 피드형	○ 사용자가 인스타그램(페이스북) 피드 스크롤시 일반 게시물 사이에 표시되는 광고 유형	메타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)
❷ 릴스형	○ 인스타그램(페이스북)의 릴스(Reels) 기능 활용 최대 60초 길이 동영상 콘텐츠 광고 유형	
❸ 범퍼형	○ 6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 광고로 시청자가 스킵할 수 없는 형식의 광고 유형	유튜브
❹ 트루뷰 인스트림형	○ 유튜브 동영상 재생 전, 중간, 또는 후에 표시되는 스킵 가능한 동영상 광고 유형	
❺ 인피드	○ 사용자가 틱톡 스크롤하며 동영상 시청시, 피드 중간 삽입 되는 광고 유형	틱톡
❻ 리뷰형 (체험단)	○ SNS 팔로워 보유한 인플루언서 연계해 상품 체험/홍보하는 바이럴 광고 유형	메타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), 유튜브, 틱톡

○ **(분석레포트)** 지원사업 결과을 바탕으로 마케팅 분석 레포트 지원

- 고객연령대, 판매포인트, SNS채널, 키워드분석 등의 **빅데이터 자료 분석 제공**

  * 제공되는 레포트 양식 및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
4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'25. 3. 26(수) ~ (연중 수시 접수)

* 선정 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 가능

□ **신청방법** : 판판대로(https://fanfandaero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* 사업신청시, 수행기관 3개사中 1개사 선택 가능
* 수행기관의 기본정보는 [참고2] 확인요망

□ **제출서류 :** 소상공인 확인서,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및 상품 기술서 기타 가점서류*(우대 및 할당지원 참조) 등

[제출서류 목록]

구분	내용	발급처
사업자등록증	사업 신청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-
소상공인확인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국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	국세청 홈택스
지방세납세증명서	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	민원24
상품기술서	판판대로 사업모집 페이지 내 첨부파일 참조	-

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3/1 경우, 유효기간이 3/1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** 회원가입 사업자번호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

*** 가점서류는 [별첨 1]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 참조

[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]

◦ **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**
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
- 사업신청일 기준 **유효기간 내** 확인서 제출
- **소기업·소상공인**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**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** 접속
(URL : https://sminfo.mss.go.kr/)

* 발급문의처
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②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02)3215-2674

5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및 선정 절차

○ **평가 절차** : 총 **2단계** 심사·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1단계. 적격심사	⇨	2단계. 전문가 평가	⇨	3단계. 최종 선정
관리기관에 의한 지원자격요건 적부 심사		선정위원회에 의한 신청 기업 및 제품 평가		평가 고득점순 최종 선정

* 선정 이후, 수행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

□ 심사 평가 방법 및 내용

○ **(적격심사)** : 신청 소상공인의 필수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
* 필수서류 : 소상공인 확인서,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상품기술서

○ **(전문가 평가)** :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여 서면평가 추진 (5명 이내 구성)

□ 최종 선정 안내

○ 최종 선정 이후, 수행기관에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이후 절차 별도 안내 예정

6 유의사항 및 문의처

□ **유의사항**

○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○ 본 사업의 동일연도 **중복지원은 불가**합니다.

○ **사업 선정 후 수행 기관 및 상품 변경은 불가하며,** 변경을 원할 경우 사업 취소 후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.

○ 당 사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직접 광고 지원하는 사업으로, 소상공인의 SNS 계정 대행 운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

○ 사업 선정 기업과 사업 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(연락두절, 서류제출 거부 등)

○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.

○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(브로커, 직원 등) 부당 개입(대리신청, 기타 수수료 요구 등)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.

□ **문의처 :**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역량지원팀(02-6678-9862, 9865)

별첨 1 중점지원 대상 및 우대사항

□ 선정 우대

○ **우대사항** :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해당 시 +5점
② '22~'24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화체육관광부(문체부)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소벤처기업부(중기부)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③ '22~'24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해당 시 +3점

□ 신청방법 및 증빙자료

○ **신청방법** : **'판판대로'**를 통해 사업 신청시 우대 항목을 선택하고,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

○ **증빙자료**

구 분	증빙자료
①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, 브랜드K	◦ 백년가게, 백년소공인 확인서 ◦ 로컬크리에이터 최종 선정 확인서 ◦ 브랜드K 확인서
② '22~'24년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- 문체부 대한민국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◦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
③ '22~'24년 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-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자	◦ 증빙 미제출 (※ 한유원, 소진공 별도 확인)

참고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**"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"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**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
2. **"관광진흥법"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**
  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
3. **"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"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**
  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.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다단계 방문판매업 예외규정에 따른 처리방법 >

예외규정에 따라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, 다단계 방문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 모두 지원 가능
단,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0조(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)에 따라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

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(부가세 포함) 합계액(가격합계액)의 100분의 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

②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 단위로 산정. 단, 다단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함

③ 상기 ①,②의 내역 확인을 위해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·지급 명세 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지원 불가

참고2 '25년도 SNS활용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관 목록

수행기관		기본정보			
A사 □	㈜모티브 이노베이션	기 업 명	㈜모티브 이노베이션	대 표 자	채의웅
		주 소	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7길 5		
		문 의 처	010-5535-6242		
		홈페이지	https://mo-tive.com		
B사 □	㈜한큐컴퍼니	기 업 명	㈜한큐컴퍼니	대 표 자	장석근
		주 소	서울 강남구 논현동 36-10		
		문 의 처	010-3365-6169		
		홈페이지	https://www.hanqcompany.com		
C사 □	㈜스튜디오 일육일	기 업 명	㈜스튜디오 일육일	대 표 자	하현종
		주 소	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, SBS방송센터		
		문 의 처	02-2113-8106		
		홈페이지	https://studio161.co.kr		

※ 수행기관 정보는 판판대로 사이트 내 공고내용 확인